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9
----------	-----

발의년월일 : 2015년 9월 11일

발 의 자 : 서윤기, 최판술, 유 용, 김정태,
김광수(노원), 문상모, 김경자,
이승로, 김선갑, 오경환,
김진철, 박준희 의원(12명)

1. 제안이유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나.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다.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한 1인가구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 라. 1인 가구 복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임대주택법」, 「여성발전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복지정책”이란 1인 가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

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동생활가정”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이란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5조(책무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 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서울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
2.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복지격차 해소 지원사업
3.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4. 소셜 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
5.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6.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7.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9조(실태조사 등), 제10조(1인 가구 복지지원)등의 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
- 단 제10조의 경우 서울시가 기 추진 중이거나 구체적 계획수립이 곤란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면, 제10조 1항 7호에 따른 비용만 발생
- ※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규정(기 추진 사업현황은 [붙임2] 참고)
 - 제10조(1인 가구 복지지원) 제1항 1,2,3호
- ※ 현 시점에서 구체적 계획수립이 곤란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업
 - 제10조(1인 가구 복지지원) 제1항 4,5,6,8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3조제1항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추계내역은 [붙임1]참고)

4.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임준혁 예산분석관(02-3705-1282)

[붙임 1] 추계 내역

○ 전제 및 방법

- 1) 물가상승률 미반영
- 2) 추계기간 5차년도 이후에도 비용발생
- 3) 실태조사 및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조사는 외부용역기관 등에 위탁 실시하는 것으로 함
- 4) 시장은 1인 가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조례안 제7조 1항)에 따라 실태 조사 및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용역도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봄

○ 총비용 : 282,398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세입	-	-	-	-	-	-
세출	소계(a)	162,398	-	-	-	-	282,398
	실태 조사 등 연구용역비	132,398	-	-	-	-	132,398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연구용역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b)	162,398	-	-	-	-	282,398
총비용(b-a)		162,398	30,000	30,000	30,000	30,000	282,398

가. 실태 조사 등 연구용역비 : 서울시 최근 5년간('10~'14년) 학술연구용역비 평균으로 산출
(단위 : 건, 천원)

구분	평균	총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 금액	건수 / 금액	건수 / 금액	건수 / 금액	건수 / 금액	건수 / 금액
현황	132,398	310 / 41,043,662	45 / 7,847,940	40 / 5,624,806	67 / 9,783,347	78 / 10,519,424	67 / 7,268,145

자료 : 서울시 학술용역 현황(시정기획담당관 시정연구팀 학술용역담당 제출 자료 인용)

나.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연구용역비(14년 1인 가구 대책 정책연구계약 원가계산서참고하여 추계)

○ 비용 : 150,000천원

- 비용 = 연간비용 × 5년(추계기간)
- 연간비용 : 30,000천원
 - 연구원 = 7,032천원 = (2,344,000*1명)*3개월
 - 연구보조원 = 9,402천원 = (1,567,000*2명)*3개월
 - 기타경비(유인물제작, 소모품비 등) = 13,566천원

[붙임 2] 기 추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규정	관련 사업명	2015년 예산	비 고
	합 계	334,035	
제10조 1항 1호 관련사업	소 계	54,498	
	기존 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17,488	1,500호 원룸형 공급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6,034	월평균 소득 70%이하 무주택자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	300	노후불량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수선비 지원(호당 1천만원)
	쪽방 리모델링	624	50호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52	
제10조 1항 2호 관련사업	소 계	277,777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	10,643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지원	33,210	
	노인 복지관 운영	60,237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18,766	
	경로당 활성화지원	24,221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32,888	
	돌봄 서비스 지원	15,497	
	독거어르신 빨래방운영	350	
	인생이모작 지원	69,00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2,962	
제10조 1항 3호 관련사업	소 계	1,760	
	13세대 융합형 룸쉐어링	150	어르신, 대학생
	임대형 공동체 주택	295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600	고시원 40개소
	위탁관리형 임대주택(빈집활용)	715	175세대